

고 시
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8-24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353호(2001.11.01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396호(2002.11.0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67호(2003.03.28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0호(2008.05.16.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승인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,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08년 6월 5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승인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

1. 정비구역의 지정

가. 정비구역 지정(변경)조서

구분	정비사업 명 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증 감	변 경	
변경	승인 제4구 역 주택재 개발사업	종로구 승 인동 20번 지 일대	24,256.20	증)189.30	24,445.50	정비구역 및 획지범위 의 변경이 없는 지적 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

나. 정비계획 수립

1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	비 고
		기 정	증(감)	변 경		
합 계		24,256.20	증) 189.30	24.445.50	100.00	정비구역 및 획지범위의 변경이 없는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2,012.80	증) 57.20	2,070.00	8.47	
	도 로	1,145.50	증) 48.30	1,193.80	4.89	
	녹 지	867.30	증) 8.90	876.20	3.58	
택 지	택지 1	22,243.40	증) 132.10	22,375.50	91.53	

2)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

가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조서

결정 구분	규 모			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위 치	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기점	종점			
기정	소로	3	1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47	송인동 20-111	송인동 20-106	-	-	면적증가 (14.5㎡)
기정	소로	3	2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104	송인동 20-45	송인동 20-70	-	-	면적증가 (33.8㎡)

나) 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 조서

결정 구분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명 칭	세분류		기 정	증(감)	변 경	
변경	녹지	경관 녹지	송인동 20-045 ~송인동 20-111	867.30	증)8.90	876.20	정비구역 및 획지범위의 변경이 없는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단순 면적 정정

3) 건축시설계획 및 건축물의 정비·개량

가)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 : 변경 없음.

나) 건축시설계획

결정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된 용도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(m) 최고층수
	명칭	면적 (㎡)	명칭	면적 (㎡)						
기정	송인제4구역주택재개발구역	24,256.20	택지1	22,243.40	종로구 송인동 20번지 일대	조합 및 분양아파트, 생활편의시설	63,885.62	23%이하	190%이하	12층이하
변경	송인제4구역주택재개발구역	24,445.50	택지1	22,375.50	종로구 송인동 20번지 일대	조합 및 분양아파트, 생활편의시설	63,885.62	23%이하	190%이하	12층이하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		-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: 전용면적 115㎡이하 - 전용면적 85㎡이하 : 총 건설세대수의 80% 이상 - 전용면적 60㎡이하 : 총 건설세대수의 40% 이상					
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					-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		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					

※ 정비구역 및 획지범위의 변경이 없는 지적확정측량성과에 따른 단순
면적 정정

4) 정비사업 시행계획 : 변경 없음.

2. 관련서류

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 주택과(☎731-1401)에 관련도서를
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 끝.